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정보화업무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특허청 정보화사업 관리 및 상위 법령·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정 내 용어, 재검토기한 등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·지침 개정사항 반영

-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및 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」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관련 규정 내 절차 및 양식을 우리 청에 맞게 반영함
 - ※ 사전협의관련 제반사항(대상기관, 대상사업, 절차·서식, 검토항목)의 구체화 및 사전협의 재신청 사유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
- 「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」 개정에 따라 적기 발주를 위해 차년도 추진 예정인 SW사업 관련정보를 과기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

나. 용어 보완, 오류사항 정정 및 현행화

- 규정 내 용어 및 인용 내용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, 오탈자 정정 및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함